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Tel. 042-481-3228 Fax. 042-481-7753



www.fta.customs.go.kr
www.fta-pass.or.kr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

STEP 1. 품목분류 상이

STEP 2. 원산지증명서

STEP 3. 직원인증

STEP 4. 여행지 휴대품

STEP 5. 기타 특혜관세 관련 사항



이행 지침 안내 20 選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 품목분류 상이

01 p.04
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
원산지증명서 발급안내

02 p.05
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
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안내

03 p.06
품목별인증수출자 전환 안내

04 p.07
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업체의
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

 원산지증명서

05 p.08
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

06 p.09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
작성 안내

07 p.10
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

08 p.11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
발급방식

09 p.12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
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

 직접운송

10 p.13
한-미 FTA 직접운송 인정서류

11 p.14
APTA 직접운송 인정서류

12 p.15
한-EU FTA 직접운송

13 p.16
한-EU FTA 자유무역지역
보관물품 수입시 협정적용 안내

 여행자 휴대품

14 p.17
한-EU FTA 협정적용 안내

15 p.18
여행자휴대품 사후
FTA 협정적용 안내

 기타 특혜관세
관련 사항

16 p.19
원산지확인서 세관장
확인제도 안내

17 p.20
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
(한-EU)

18 p.21
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
(한-EU)

19 p.22
한-아세안 FTA 자유무역지역
가공물품 협정적용

20 p.23
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



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안내

- ▶ **현행 FTA 협정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-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**
 -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▶ **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공식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국의 HS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**

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

- | | |
|---|--|
| <p>①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, 품목분류 확인서, 사전심사결정서(advance ruling)등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.</p> | <p>② 수입자가 송부하는 협약서는 수입자 자신이 작성한 비공식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|
|---|--|



수입국과 HS번호 상이 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안내

- ▶ **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**
- ▶ **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**
 - 인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HS번호(6단위)로 인증하고 있습니다.
 - 수입국에서 HS번호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- 동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증된 품목과 같거나 인증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로 부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국의 HS번호로 추가로 인증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

- | | |
|---|--|
| <p>①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, 품목분류 확인서, 사전심사결정서(advance ruling)등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.</p> | <p>② 수입자가 송부하는 협약서는 수입자 자신이 작성한 비공식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|
|---|--|



품목별인증수출자 전환 안내

- ▶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FTA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단, 품목별 인증에서 업체별 인증으로 전환하고 할 때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품목별 인증업체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
 -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시 인증수출자가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 능력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.
- ▶ 인증수출자 번호는 사업자 별로 하나만 보유해야 하므로 업체별 인증 전환 시 기존 품목별 인증은 취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

- ▶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,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▶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상대국의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품목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, 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 - 사후검증이 실시되는 경우 그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| ②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

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

▶ 한-EU FTA에서 수출자 국가와 생산지가 다른 경우

- 한-EU FTA에서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영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직접운송 등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,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▶ 프랑스의 수출자가 아일랜드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프랑스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입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여부는

-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닌 그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수출 당사가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도 인정됩니다.
- 다만,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'인증수출자'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 장소와 작성일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.


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안내

▶ 제3국 거래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상의 송장번호와 수입자가 제출한 송장번호가 상이한 경우

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
-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,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집니다.
-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, 원산지증명서의 품명,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합니다.

▶ 아울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는 거래관계 등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FTA특례법 제 13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, 검증결과에 따르게 됩니다.



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

▶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를 운송목적으로 분할 운송하는 경우 한-EU 및 한-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

- 동일선박/ 동일항차의 여러 B/L로 수입하는 경우
- 다른선박/ 다른항차의 여러 B/L로 수입하는 경우

▶ 한-EU FTA의 경우에는

- 동 협정 제20조(분할수입)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

한-미 FTA의 경우에는 동 협정에 다른 원산지제품은
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가능

- | | | |
|--|---|---|
| <p>❶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'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'에 따른 완성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미완성제품일 것</p> | <p>❷ 포장,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</p> <p>❸ 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이상의 추가 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</p> | <p>❹ 관세법 제17조(적용법령)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거가 있을 것</p> |
|--|---|---|


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

▶ 원산지증명서에 여러 수출물품이 있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

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수출신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발급신청하더라도 하나의 품목번호(HS)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 물품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(HS)별 기재에서 물품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품목번호(HS)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, 규격, 품목번호(HS),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합니다.

근거협정



한-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

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.


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

▶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

- 「FOB 금액란」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작성, 다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일로부터 2년의 과도기간 동안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치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.

적용예시

'13. 10. 1.자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: '14. 9. 30.

-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,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(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)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

한-미 FTA 직접운송 인정서류

▶ 한-미 FTA 제3국 통과 · 환적 운송관련

- 미국 수출자가 홍콩의 중개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3자 무역에서
미국에서 출항 → 중국의 보세구역 장치 → 한국 입항 시
직접운송으로 인정받아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
 - ①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반출입 서류(원본)
 - ②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운송서류(선하증권 등)에 의해
 - ③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제3국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던 물품도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고, 세관 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.



APTA 직접운송 인정서류

▶ 아태무역협정(APTA)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인정하는 서류

-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(또는 항공운송 Airway Bill)
- 최초수출국 운송업자(운송주선인 포함)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.

중국 → 홍콩 → 한국 도착의 경우,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 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.



한-EU FTA 직접운송

▶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EU 역내 수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- 한-EU FTA 협정에 따라 제3국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 역내 소재 수출자만이 작성 가능합니다.
-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으며,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인 EU측의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.



한-EU FTA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수입시 협정적용 안내

- ▶ 한-EU FTA에서 EU역내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출자에게 판매한 후 비당사국 수출자가 다시 우리나라에 판매한 물품으로서
 - EU역내에서 직접 운송되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협정관세
- ▶ 자유무역지역 사용·소비 신고 시 제출하였던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운송서류 등 직접운송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 - EU측 수출자가 작성,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입신고 되는 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수입신고 시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▶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나,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는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
 - 당해물품이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12개월이나,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

한-EU FTA 협정적용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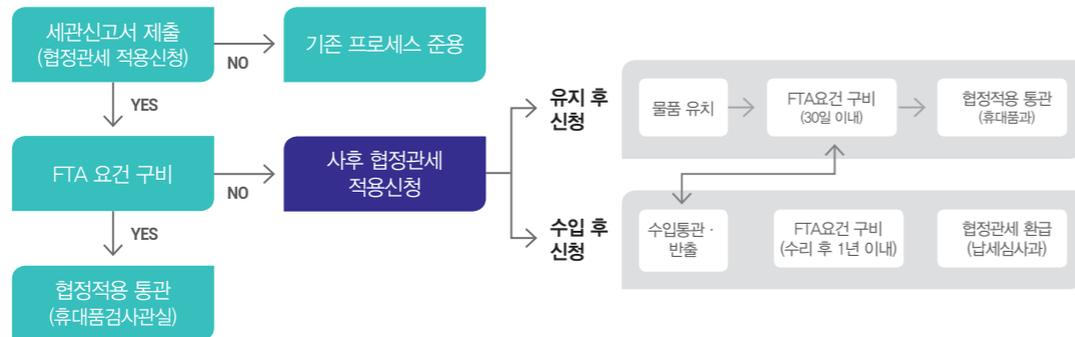
- ▶ 미화 1천달러 미만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증명서 면제범위
 - 여행자가 EU 역내 여러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
 - 각 여행자별로 미화 1천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.
 -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, EU지역 구매영수증의 '원산지신고문안' 및 '판매자서명' 기재여부 확인
- ▶ 6천유로 초과 여행자휴대품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여부
 - 6천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,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.



여행자휴대품 사후 FTA 협정적용 안내

▶ 미화 1천달러 미만 여행자 휴대품의 원산지증명서 면제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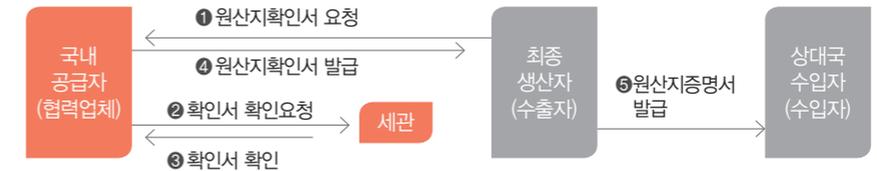
- 휴대품 신고시 FTA 협정세율 적용 의사가 있는 자 중 원산지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정적용이 어려운 경우
-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여 일반수입 시 사후 협정적용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.
- 예외로, 일반수입신고로의 전환이 어려운 여행객은 물품유치 후 유지기간내 요건을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안내

▶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

- 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세관장이 사전에 그 적정성을 심사·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

▶ 처리절차

- 신청인은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그 인증서류를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.

HS 6단위별로 신청하며, 모델·재료·생산 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각각 신청합니다.

- 세관장은 제출서류의 형식요건을 심사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(원산지기준·품목분류 충족여부, 재료·제품·재고관리)를 실시합니다.
- 이상이 없는 경우, 시스템에 심사결과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번호를 등록합니다.
-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관세청 FTA포털(fta.customs.go.kr)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



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 한-EU

- ▶ EU에서 수입했던 6,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,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

적용예시

물품가액 : 5,000유로, 수리비 1,500유로

-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므로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,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- 수리된 물품이 탁송화물이고, 물품이 수리되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수리비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

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 한-미

- ▶ 한-미 FTA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 되는 상품의 과세 여부

-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,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된 기타 제비용을 포함

수리비, 왕복운임을 포함한 물품의 가치가 과세가격임

- 따라서 한-미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수리·개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리비 및 왕복운임 모두 면제



한-아세안 FTA 자유무역지역 가공물품 협정적용

- ▶ 한-아세안 FTA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 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
- ▶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 처리한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.
 - 한-아세안 FTA 부속서3(원산지규정) 제2조(원산지기준)에 의거 수입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.



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

- ▶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6번 세 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“예” 또는 “아니오”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

미소기준 적용 시 원산지소명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.

- ①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: '예' 표기
- ② 19번 최소기준 적용여부 : '예' 표기(세부내역은 별지에 작성 첨부)

- ▶ 부가가치기준 충족시 부가가치비율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한도를 적는 것인지, 아니면 실제 부가가치를 적는 것인지
 -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'예' 표기하고,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.